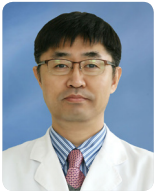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한다



김수영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경기도가 2018년 3월 20일 가장 먼저 「경기도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만 4년이 되는 올해까지 여러 시·군·구 의회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각 지자체장은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제4조의 2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과 제4조의 3항(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갖추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연로한 노동자가 출근 첫날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임 논란이 있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지자체 발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산하의 건물관리, 급식, 폐기물 수거, 도로관리, 산불 예방, 농업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위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정비되어야 하며,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6월까지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에 발행한「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에 실려있는「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에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산업안전보건센터」및「산업안전보건 심의 위원회」에 대한 조항만 제시할 뿐 지자체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자치단체 내부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할 사업주 및 사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를 확보하고 육성할 근거 조항은 없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위반행위의 신고를 맡긴다면 위촉된 전문가가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하려 해도 견고한 사업주의 반발을 뛰어넘어 실효성 있는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정비되어야 하며,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6월까지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관할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향후 각 지자체 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며, 지자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공분야 노동자들에게도 양질의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